

■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15.9.15.>

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(제4조제4항 관련)

안전관리자의 구분	채용인원	기술자격
1. 안전관리총괄자	1명	
2. 안전관리책임자	1명	가.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)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2) 소방설비산업기사 이상 3)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4)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이상 5) 화공기사 이상 6) 전기산업기사 이상
3. 안전관리원	2명 이상	가. 송유관의 설치공사 및 운영에 관한 실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1) 위험물기능사 이상 2) 배관기능사 이상 다.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

비고: 안전관리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.